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- 118호

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

방송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,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의견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10. 12. 23.

방송통신위원회

1. 재허가 심사결과

○ 근거

- 제2010-76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(2010. 12. 22.)

○ 심사결과

사업자명	대표자	방송구역	심사 결과	허가 만료일
하나방송(주)	이덕선	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, 창원시 마산합포구, 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	재허가	2014.2.11.

2. 시청자의견 접수결과 및 반영여부

가.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

○ 공 고 일 : 2010. 10. 29

○ 공고매체 : 관보,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, 해당 지방자치단체
홈페이지 게재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

나. 접수결과 : 6건

-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필요
-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여 왔음

다. 시청자의견 반영여부

- 접수된 시청자의견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하였음. 끝.